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의안
번호

3009

곽향기 의원 (국민의힘, 동작구3)

- ☐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이경숙·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곽향기 의원입니다.
- ☐ 최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타 업종 이탈, 신규 종사자 유입 저조 등 택시 기사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저하되는 등 일반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- ☐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일반택시운송사업 경영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정된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」(2025.07.28.)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- ☐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 역시 상위법령에 맞춘 완화 기준 개정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필요한 보유 차고 최저 면적 경감 기준을 종전 40퍼센트에서 앞으로는 50퍼센트 범위로 확대해 경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.

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